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구 승소로 종결되었으나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 비용 지출이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회수 제한 사유 및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회수 포기를 방지하고 철저한 소송비용 회수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수 제한(포기) 대상 구체화 및 자격요건 명시(제22조 제2항)
 - 무자격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파산·면책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사망·실종·행방불명자 및 법률적 착오·부지로 인해 소를 제기한 경우 회수 포기

나. 소송비용 회수 절차 명시(제22조 제3항)

- 행정사건 30일, 민사사건 60일 이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고지, 독촉강제집행 절차 진행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34, 팩스 : 02-3396-8567~8, email : deck101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제22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2호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2호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 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④ 소송주판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송주판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관한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u>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신설></u>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 <u>인경</u> <u>우</u> <u>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u> <u>3. · 4. (현행 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u>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u>
<u>2. · 3. (생략)</u> <u><신설></u>	

<신 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신 설>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
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
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